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2월 13일, 부승찬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2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2025.9.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5.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제8차 국방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부승찬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인 보충역(이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함)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 감면이 규정되어 있음.

이에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대체복무요원 소집에 불응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종전에는 수형을 이유로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의무가 감면되었음.

그러나 2024년 7월 「병역법 시행령」이 개정(2025년 1월 시행 예정)되어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이 병역기피의 목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수형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없도록 변경되었음.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은 병역기피 목적의 형사처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하여 병역의무가 감면되지 아니하므로,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은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이후 현역병 입영 대상자 등으로 돌아가 입영

• 소집에 응하여야 하나 대상자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경우 반복된 형사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음.

이에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대체역 편입이 취소되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대체복무요원 소집 불응으로 형사처벌된 경우에도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서덕교)

개정안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대체역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대체역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전에는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소집을 기피하는 경우 「병역법」 제88조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수형 후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에 따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되어 병역 의무를 수행하였음.

하지만,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후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대체역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사유로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금지되어 수형 후 현역 또는 보충역의 신분으로 입영·소집에 응하여야 하나 해당자가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입영·소집을 거부할 경

우 반복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개정안은 대체역 편입자 중 대체역 소집에 응하지 않아 「병역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그 병역 신분을 유지시켜 대체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의 신념에 따라 병역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타당하다고 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부승찬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대체역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체역 편입을 취소하지 않고 대체역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도 포함되도록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내용

체계·자구 심사 내용 없음

- [붙임] 1.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대체역 편입 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조문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병역법」 ‘제88조제1항’을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수정함(안 제2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5조제1항제4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 ----- ----- ----- ----- -----. 1. ~ 3. (현행과 같음)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 -----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4. ----- ----- ----- ----- ----- ----- ----- ----- ----- -----. <u>다만,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하여 「병역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제외</u>	4. ----- ----- ----- ----- ----- ----- ----- ----- ----- -----. <u>다만,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u>

	<u>한다.</u>	<u>고유예를 포함한다)</u> <u>는 제외한다.</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5. ~ 7. (개정안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② ~ ④ (개정안과 같음)

법률 제 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병역법」 제8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병 무청장은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편 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대체역 편입 취소) ①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편입된 때부터 제26조제1항 에 따른 예비군대체복무를 마 칠 때까지의 기간 중에 저지 른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 <u><단서 신설></u>	4. ----- ----- ----- ----- ----- ---. 다만, 「병역법」 제88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